

언론관계법의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고찰

김 병 국
원광대 신방과 교수

- ☐ 서울법대 및 동 대학원
문학박사(언론학)
- ☐ 교육개혁위원 역임
- ☐ 논문: 『반론권제도의 언론 제도적
특성 연구』, 『언론사상과 사회를
보는 눈』, 외 다수

1. 서 론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래, 1987년 6월을 하나의 기점으로 우리 현대사를 구분한다면 그 이전의 민주화는 외형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 위주의 양적 변화, 이후엔 내실을 기해 나가는 질적 변화라 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언론과 권력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것이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논쟁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언론과 법의 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 급격히 발달한 통신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대중사회와 자본주의의 국제화,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언론기업도 거대 독점 집중화되는 현상이 가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법적 대

응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¹⁾

그간 언론과 관련하여 본질적 명제로 여겨져 왔던 언론자유 문제만 하여도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떤 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제도화하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는 기본 시각도 그 시대적, 상황적 현실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즉,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언론 출판활동에 대한 억압, 검열 허가제의 철폐 등을 주장한 이른바 국가권력의 간섭과 억제로부터의 자유보장을 의미하였으나, 대중매체가 양적·질적 면에서 급격히 발달하면서 언론의 자유문제는 단순히 '국가권력(정부) 대(對) 국민'이라는 양분적인 긴장관계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 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이른바 '정부·국민·언론' 3자의 역할분담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²⁾

미국의 경우 언론자유에 관한 논의는 1910년대 말

1) William, E. Francois(1986).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Columbus, Ohio:Grid, p.585.

2) 堀部政男(1977), 『アクセス權』, 東京:東京大學出版會, p.34.

부터 헌법규정을 둘러싸고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60년대까지는 2극 구조적 사상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언론의 자유방임의 논거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1913년 '에이브람스 對 미합중국 사건 (Abrams V. U. S.)'에서 Oliver Wensell Holmes 판사가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사상의 자유시장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J. Milton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였다.³⁾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행돼 나감에 따라 미디어는 대규모, 독점화 현상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국민 대다수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어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2개의 계층으로 양분되어, 이는 마치 양자 간에는 오늘날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처럼 사실상 신분관계가 고착되어 입장의 변환은 없어져 가게 되었다. Barron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가' (media manager)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으며, 그리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⁴⁾

그런데 Barron이 지적한 이런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하의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문제로 오늘날 새로운 언론규범에 대한 당위적인 요청이 있게 되며 법과 언론의 관계는 더욱 복잡적 양상이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언론은 권력과 협조·갈등의 불연속적 반복이면서도 대체로 공생적 관계였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더니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8월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후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방송까지 언론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사생결단식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언론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새삼스레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논쟁이 되었으며 언론관계법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전통적인 언론자유의 이념을 전제하면서도 오늘날 언론의 사회적 성격이 <정치권력→언론→수용자 개인>으로 중심축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언론제도의 배경이 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철학의 변화를 전통적 자유주의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사회적 책임이란 말은 용어적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표현이지만, 'Four Theories of The Press' (Fred S. Siebert et al)의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 'Last Rights'의 다음과 같은 구절⁵⁾에서와 같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미 Platon이나 Aristoteles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이론의 주창자로서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한 Millton이나 공리주의 입장의 J. S. Mill의 저작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행위는 자유방임 체제 내(內)-다시 말해 '프레스의 4이론'에서 개념 규정한 자유주의 이론

3) 팽원순(1990), 『매스커뮤니케이션 法制理論』, 서울:법문사, pp.109~111.

4) J. A. Barron(1973),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Bloomington, Ind.:Indiana Univ. Press, p.5.

5) John C. Nerone(1995), *Last Rights, Revisting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l, Univ. of Illinois Press, pp.121~2.

언론을 각기 자기식의 개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거시적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물론 사회적 책임 이론은 이런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매체가 교육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매체 자원에 대한 어떤 감독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조적 변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구조적 변화(정부의 규제를 포함하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론의 전망과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는 이 개념에서의 필연적인 막연성 때문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언론관계법들에 대해서는 언론을 각기 자기류의 개혁을 위한 도구적 차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모든 개념은 실제 적용하는 데는 막연하고 포괄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학문적 차원으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언론관계법과 헌법적 논란

민주적 여론 형성, 언론의 투명성 확보, 언론의 건전한 발달과 질 제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제시하며 금년 7월 28일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2004년에 제정된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과 함께 헌법상 언론자유 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언론자유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인데, 이는 특정신문의 비판적 언론활

동을 위축시키고 친(親) 정부적 신문을 키우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시장경제 원칙과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는 언론통제법이라며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신문사마다 독자권익위원회가 신설되고 신문사 바깥에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만들어지며 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큰 변화다. 일간 신문사들은 독자위원회를 두고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독자들의 의견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 신문사마다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문유통구조 개선, 구독료 지원 사업, 독자권익 보호와 언론공익 사업 등을 하는 문화부 유관기관으로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수입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검증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 구성을 보면 문화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언론평해구제법의 경우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정보도 소송제기 후 3개월 안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개월 만에 언론의 보도를 사실상 취소하는 정정보도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켜 권력비리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재위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및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또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하였는바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특정신문의 논조나 보도를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 신문사와 방송사, 뉴스통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업무와 자문 권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도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신문·방송·통신사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아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개념조차 있지 않아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약해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현재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1항)와 평등권(제11조 1항)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법에 대한 위헌심사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발전 위원회의 지위를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켰고 일부 신문의 공동배달을 지원하기 위한 신문유통원 설치에 대한 조항도 없었다.

그러나 원래 신문법 개정은 거대 중앙일간지에 대한 신문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 다양한 신문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방송 등에 의한 개인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법 자체가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 자체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예컨대, 인터넷 언론 특혜시비의 경우 오늘날 언론매체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타매체가 계속 등장하는바 신문에 의한 여론 독점 문제만을 규제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이외에 이들 매체들의 정치적 편향성

으로 인해 법조항들의 불공정 논의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실은 법 적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여 근본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바 단지 몇몇 법조항의 해석과 비판 문제 이상으로 헌법상 언론자유와 언론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신문 집중화가 언론자유와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신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1968)는 단일 기업에 의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20%이상이면 언론자유와 위함이, 40%이상이면 침해가 있다며 신문사간 격차 시정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신문발간지원, 시장의 평준화 도모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슈프링거 신문재벌은 신문의 자유는 일반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되 그 정보원의 수에 관해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 뒤에 신문 이외의 시장지배적인 수 개의 대규모 잡지들을 매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공동운영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보호법이 1970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소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언론의 독과점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즉 신문 산업은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자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개입의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도시에서 일간지들이 계속 문을 닫았는바(1970년 1,748개에서 2001년 1,468개로 감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⁶⁾ 즉 위와 같이 신문 집중화가 언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며 언론자유해석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6) 권재웅(2003). 미국의 언론시장에 대한 법제와 정책. 「세계의 언론법제(상권)」. 한국언론재단. pp.164~5.

**언론자유와 본질과 목적을
자유주의적 관점의 유용성과 한계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쟁점 언론관계법 조항을 이와 대비해야**

대응은 다른 방식이었다. 독일은 법적 개입이전에 어느 정도 자율적 조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고, 미국은 법으로 지원을 유도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는 언론자유 현실과 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의 경우 정치·사회적 개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되어 헌법학이나 언론학에서 이미 고전적 주제가 된 언론자유와 본질과 목적을 자유주의적 관점의 유용성과 한계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쟁점적 언론법 조항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

3. 언론자유와 본질 및 이론적 고찰

현행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런 헌법상 기본명제가 언론의 실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는 간단할 수 없다. 예컨대 Merrill은 인간은 우리 자신의 양심에 지워진 임무를 결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임무로 전가시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언론의 자유도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과 언론인의 자유라고 주장한다.⁷⁾ 그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언론사의 과도한 조직화, 제도화 그리고 대중지향성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위협요소이며, 기사를 글 쓰는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중지향성에 대한 그의 입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주장이 개

인의 상실을 가져오며, 기자들이 다수의 대중을 만족시키는데 치중하다 보면 기자 자신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Merrill은 언론인들이 자율과 자기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적응과 협력을 피해야 하며, 오직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위할 때 언론의 자유는 완성된다는 철저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국민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동일한 액세스(access)권과 참여권을 갖는다면 매체는 아무런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매체는 여론과 대중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만민완전균일사상(egalitarianism)은 불가능한 개념이며 그것은 실익은 없고 언론자유에 해독만 끼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⁸⁾

용어상 '자유'와 '언론자유'는 하나의 개념일 수 있지만, 가치관이 개입된 철학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거의 상반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며 사회변혁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어원상으로도 자유의 다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바 '자유'라는 말을 할 때 흔히 'freedom'과 'liberty'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Berlin의 지적처럼 'liberty'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freedom'은 '행위자로서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⁹⁾

7) John C. Merrill(1974), *The Imperative of Freedom : A Philosophy of Journalistic Autonomy*, N.Y.:Hastings House, 특히 2장 참조.

8) John C. Merrill, 앞의 책, p.68.

9) Isaiah Berlin(1958), *Two Concepts of Liberty*, London:Oxford Univ. Press, p.37.

분명 헌법의 표현대로 언론은 자유로운 존재이어야 한다. 이는 언론이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와 의견교환을 방해하는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든 언론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기본질서로서 국가·사회적으로 근본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 체계내의 사회적 제도로서 언론은 그 제도적 원리를 헌법상 원칙인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야만 한다. 또한 이런 전제 하에 언론은 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며 사회·경제적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 관계 속에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자유언론제도로 보장받는 것이다. 언론 자유에의 근거로 진리 발견, 자아실현, 민주주의로부터의 주장 등의 범주로 나눌 수도 있지만 19세기 중반 Mill의 〈자유론〉으로 이어지는 이 진리발견의 관점¹⁰⁾은 이후 미국의 언론관계 판례를 통해 언론자유에의 이론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한 대표적 판례로 ‘Abrams vs. U.S.’ (1919) 사건에서 Holmes 판사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그것들은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검증될 때 신뢰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이론이 함축하는 것이다”라는 소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리발견의 수단으로서 언론자유에의 정당성을 법률 속에 구체화시켰다.¹¹⁾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이성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개인의 표현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표현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언론인들 간의 ‘합의’ 일수도 있다. 그 결과 일반 개인들은 사건 자체로부터는 물론 그 사건의 진실로부터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헌법적 이상인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표현물의 자유시장이 점점 독과점화 되면서 매체를 소유 통제하는 특정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장시켰고 반대로 수용자라고 하는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억압하게 되어 개인적 이익과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라는 언론환경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아왔지만 정보화사회도 경제적이든 인종적이든 성적이든 간에 기존의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보상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¹²⁾

따라서 이제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관점에서 공익에의 봉사 또는 공적 책임 등을 떠맡아야만 하게 되었다고 M. Gourinat는 지적하는바 공적 책임 또는 공익지향 감정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는 이성적인 숙고에 달려있지만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은 행위의 책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묘사는 서로 대립된 요소

10) 밀은 〈자유론〉에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가령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겐 인류를 침묵시키는 권리는 없는 것 같다 ...”

11) 강상현, 윤영철 공역, 앞의 책, p.47.

12) John C. Nerone, 앞의 책, p.180.

언론에 대한 불공정 의식 문제는
사회 전반적 제도 개편 요구와 맞물려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까지 등장시켜

간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¹³⁾

실제 오늘날 언론자유 관념을 보는 법적·철학적 시각의 범위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낭만적인 관념 때문에 생겼지만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open market place of idea) - 자동 조절되는 - 에 대한 신념은 남아있으며 신기하고 인기 없는 사상이 토론의 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적 개입이 요청될 정도로 사정은 바뀌었다”¹⁴⁾고 한다. 따라서 자연법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해를 미치는 언론의 자유는 통제하지 않을 수 없고 사생활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언론행위 자체가 재판에 회부되어 법관의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언론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나 Barron의 액세스권 주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사회 일반에서도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Cassierer는 “신문,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와 TV방송은 모두 중심의 몇 곳에서 제작되어 주변(periphery)으로 배포”되며 “대중은 ‘소비자’ 또는 ‘표적관중(target audience)’으로만 파악”되고 “그들 수신자의 반응(response)은 오직 양적인 시청

자수, 독자수로만 파악될 뿐”이라고 비난하고 “이들 매체는 정보와 오락의 매체일 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동떨어져 있고 권위주의적 하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전도구로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¹⁵⁾

그리하여 언론의 이러한 불공정 의식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편 요구와 맞물려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까지 등장시켰다. 이 이론이 제기된 첫째 요인은 사유 미디어의 상업화와 독점화 그리고 사회책임이론의 규범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제도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는데 McQuail은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⁶⁾

- 개개의 시민들과 소수 집단들은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 즉 커뮤니케이트 할 권리와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로부터 봉사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소규모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참여적인 미디어 형태가 대규모이고 일방향이면서도 전문화된 미디어보다 좋다.
-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중요해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등

과거에 예상치 못한 언론 상황에서 새로이 공정성과 형평의 원칙을 기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헌법

13) Michel Gourinat, *De la Philosophie*, 송영진 역(1986), 『철학의 단계적 이해』, 서울:서광사, pp.210~3.

14) J.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Concept of the First Amendment*; 팽원순(1990), 『메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법문사, pp.110~2, 재인용.

15) Henry R. Cassierer, “It’s a Long Way to Communication” in L. S. Harms and Jim Richstad, *Evolving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Communicate*, pp.53~64.; 추광영, 앞의 논문, p.455, 재인용.

16) Denis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 An Introduction*, 오진환 역(1990), 『메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나남, pp.152~3.

상 언론자유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 하겠지만 고전적 언론자유 개념이나 본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언론자유시장론과 현황

전통적으로 신문은 방송 등과 달리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시장에서도 폭넓은 자유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일 신문계 내에서는 물론 타 매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적자생존과 소유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우리 언론시장의 문제점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방지 시장은 이미 약탈적 시장임이 드러나 있고(장호순, 2003), 중앙일간지 시장도 지난 10여 년간 마찬가지로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들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공정행위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정연구, 1999). 발행부수 전체의 약 50% 정도가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뿌려지는 무가지라고 하면 시장은 파행적인 것이다. 더욱이 정권의 비호 아래 광고시장을 포획했던 한국 신문에 있어서 광고 단가는 광고주인 기업이 결정하기보다, 지면을 파는 언론사가 결정해 왔고,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광고주인 기업이 부분적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광고단가를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상철(2002)에 따르면 한국 신문의 광고단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뉴욕타임즈 전면컬러광고가 2만 8천 달러, 월스트리트가 약 1만 달러 수준인데, 한국 주요 일간지들은 775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방송시장은 국가의 후

견 아래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획득했던 두 공영방송사는 시장에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문제가 방송 3사의 시장지배와 관련해서 외주제작 문제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시장진출 문제이다.(윤석민·장하용, 2002)¹⁷⁾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J. Milton으로부터 Holmes 판사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공개시장과 자동조절작용을 전제로 하여 주장되어 왔다. 이들에 의하면 사상의 공개시장에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설혹 허위가 일시적으로 이기는 한이 있어도, 선악과 진위가 경쟁하는 경우 결국은 선(善)과 진(眞)이 자기수정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근대 자유주의에서의 시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자유·평등의 시장을 인간 삶의 중심부에 둬으로써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수의 개인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에 있어 시장은 힘있는 소수로부터 힘없는 다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공존의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시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재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한 경제학상 자본주의 이론이 언론시장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아담 스미스적 자유방임주의는 기업가들의 경쟁이 보장되는 자연 경쟁 상태에서만 바람직한 것이고 경제적 독·과점시에 반(反) 독점법이나 공정경쟁법 등에 의한 정부 규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언론 기업의 집중 또

17) 강명구(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p.335.

현재 언론시장은
'규제를 하여도 야단, 하지 않아도 야단'인
딜레마에 빠져있어

는 독점의 경우에도 공익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오늘날 불공정한 언론시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개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필립스는 언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는 독점 방지법을 언론에도 적용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수도·전기·전화 사업 등과 같이 공익 사업규제법을 원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클린은 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방송은 모두 방송 시간의 1/10을 시민들에게 할애하고 신문의 경우에는 독점 상태에 있고 발행 부수가 10만 이상인 일간지들에게는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의 관습인 소위 십일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배그디키언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보다는 훨씬 온건한 음부즈맨의 설치, 각 지역별 언론위원회의 창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란 비난을 더욱 많이 받고 있고 필립스와 재클린의 규제 요구는 오직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론위원회와 음부즈맨 제도도 외부 간섭이란 이유 때문에 거의 기피하고 있고 2~3개 신문과 지역에서 실험적으로만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사회책임이론의 내재적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책임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사상의 근간에 다 언론의 책임성을 접목시킨 일종의 비판으로 볼 수 있으며, 일견 이율배반적인 자유이다. 따라서 아직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천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묘방을 찾지 못하고 있고 독점화의 문제도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스톤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제를 하여도 야단, 하지 않아도 야단(damned if we do, damned if we don't)'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¹⁸⁾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힘을 얻어 가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과 현실은 복잡적이며 모순, 순환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인간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시장원리에 의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의 시장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 교환하는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시장 역시 단순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실로 시장은 부자유와 불평등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공간으로 최대의 부를 창출하는 풍요의 원천이며 최적의 분배를 결과시키는 정의의 원천이 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사회적 책임이론에 대항하여 언론에 대한 사상의 공개시장에서도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론제도에 대한 상반된 논의는 실은 어떻게 언론개혁을 수행하여 좀 더 민주주

18) 추광영(1983). 언론의 독점화 경향과 사회적 책임, 「언론과 사회」, 서울 : 민중사, pp.34~5.

의에 적합한 언론구조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며 그 개혁의 공통적 내용으로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기능의 정상화 및 다양한 여론의 공론장 형성 등이다. 즉 언론시장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 규제적 입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탈규제정책으로 자유시장적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언론 통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바 하나는 시장중심의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국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개입주의적 관점이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언론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독자나 시청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언론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발행부수공사(ABC)제도와 같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개입주의적 관점은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보수신문에 의한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사주나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언론 스스로에 의한 자율개혁은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에 의해 정간법 개정과 같은 타율적 장치가 필요하며 왜곡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가 언론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언론개혁운동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까닭은 이처럼 언론개혁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언론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진보적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개입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과 '빅스리' 보수신문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현재의 언론개혁운동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¹⁹⁾

그러나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도 그 통제요인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권력이, 민주화 시대에는 자본의 역할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 비중 변화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의식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기자들은 정치권력이나 사주/사장의 '편집/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이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단을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광고주'(오프라인 20.3%, 온라인 27.5%)를, '소속 매체의 편집 또는 편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집단'으로는 편집·보도국 간부를 지적하였다(오프라인 60.4%, 온라인 50.0%). 다음으로 오프라인 기자들은 '사주/사장'(11.7%)을 지적한 반면 온라인 기자들은 '독자나 시청자'(16.7%)라고 답했고, '사주/사장'(8.8%)은 네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2005년 조사를 2003년의 조사와 대비해보

19) 양승목(200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언론정보연구」,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pp.76~7.

20) 한국언론재단이 2005년 3~4월에 걸쳐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언론자유 제한과 관련된 언론인 의식 조사임.

언론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누구로부터 언론자유 지킬 것인가 변화,
여기에 언론 외적 요인 부가되면서 논쟁 확대

면 ‘정부/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많이 낮아지고 ‘광고주’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편집·보도국 간부의 영향력은 늘어난 반면, 사주/사장, 독자 및 시청자, 정부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리하여 매체간 경쟁은 시장경쟁이 핵심으로 광고 수입을 위한 경쟁일 뿐 의견과 사상의 경쟁은 아니며 설사 의견의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극소수 독과점 기업가들의 경쟁이고 그 내용도 이들 특수 계층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의 목표를 점차 정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 언론개혁운동의 내용 변화를 보면 1999년까지는 언론개혁운동의 핵심역량이 방송법 개정에 모아졌다가 2000년 초에 새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언론개혁운동 진영은 신문개혁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운동방향이 바뀌게 된 것은 방송이 집권세력인 ‘국민의 정부’와 이른바 ‘코드’를 맞추어 갈 수 있게 된 반면에, 신문시장은 여전히 ‘빅 스리’ 보수신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빅 스리’ 보수신문이 여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빅 스리’ 보수신문의 시장 지배는 신문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과 우월한 판매망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덕분

이라고 본다. 따라서 ‘빅 스리’ 보수신문의 독점적 위치는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보수신문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내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간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²¹⁾ 즉 언론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론 자유를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가의 대상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정치·사회적 개혁 방향성이라는 언론 외적 요인이 부가되어 논쟁이 순수 시장론적 차원을 벗어나게 되었다.

5. 결 어

현재 우리 언론은 언론의 개념, 언론과 정부 및 국민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온라인 미디어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중소 신문들이 경영악화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도전을 펼치는 등 언론계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부의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편과 이에 대한 기존 거대 언론의 대응에 따라 새삼스레 언론 자유와 통제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상 언론은 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와 통제의 일직선상의 어느 한 점에 위치하여 왔다. 자유와 통제는 상호 모순된 개념으로 언론 현실에 적용할 때 갈등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의 조화된 합을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21) 양승목, 앞의 글, pp.70~71.

리한 조화된 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그것은 자유가 통제를 보는 시각, 통제가 자유를 보는 시각 사이에는 물론이고 자유가 자유를 보는, 통제가 통제를 보는 눈에도 많은 편차가 있다. 또 이런 시각차가 국가 이념이나 정치철학과 결합될 때 그에 대한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언론이 정치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 지배 헤게모니 전략과 필연적으로 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는 언론구조에 영향을 주고 언론구조는 당연히 정치구조 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된 언론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 개혁 자체에 대하여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언론법 내용에 대하여는 상반된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바, 결국 정치적 협상에 의하거나 정치·사회적 결단에 의해서 합헌성이 제공된다고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와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소마비아(Somavia, Juan)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개편은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나 경영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정치적 결단과 개편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정보가 기본적 욕구이며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재이며 필수품이란 인식이 필요하며 상업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업과 국영 기업 둘 다 부적합한 형태이며 공사 형태의 공영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믿어져 온 언론 자유는 기업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고, 정보에의 권리를 상업적 권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되며,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정보의

사적인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제도는 사회의 복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여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공공 서비스, 말하자면 소수 기업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에 입각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임있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커뮤니케이트권 이론가들의 주장인 것이다.²²⁾

이러한 언론을 둘러싼 상호관계와 자유권의 변화는 사회현상으로서 변화해 나가는 언론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 중 어떤 것은 어느 날 아래 위가 바뀐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한 듯 언론자유에 남다른 신념을 가진 Thomas Jefferson은 1789년 9월 6일 James Madison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떤 사회도 영원한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왜냐하면 죽은 자가 오늘 살아있는 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언제나 살아있는 세대의 것이다”라고 기록했다.²³⁾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게 당연히 살아있는 법이어야 하며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하여 융통성 있게 확대 재해석이 행해지기도 하며 나아가 개정 및 새로이 제정되기도 한다. 언론관계법의 해석과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정자본주의 이론에서는 물론이며 특히 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며 다양성과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1963년 이래 신문위원회가 발행부수의 나선형(spiral) 이론을 제시하며 열세에 있는 신

22) 추광영, p.42.

23) J. A. Altschull, *From Milton to McLuhan*, 양승목 역(1993), 『현대언론사상사』, 서울:나남, p.14. 제인용.

언론의 공적 책임 의식 회복과 정부·시민단체의
객관적 신뢰 확보 선행 통해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에 대한 학문적 접근 계기 만들어야

문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보조, 정당을 통한 간접보조, 공동배달제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직접보조는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고, 간접보조는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언론이 상업적 언론의 본질상 왜곡된 매체상황과 제도화되지 못한 시장을 스스로 규제하지 못해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헌법정신에 맞도록 사상의 공개시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법 개정에서 그 개혁이 순수 법적인 논리를 떠나 보수와 진보 간에 정치적 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매체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헌법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법 논쟁은 이러한 싸움에서의 승패가 우리의 정치지형도를 바꾸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은 새로이 제정된 신문법이나 언론피해구제법 등의 규정 그 자체로서 대립된 이해관계층의 어느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불리한 그런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갈등관계로 인해 법 개정의 의도 및 법운용의 공정성을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저널리즘 본분을 이탈한 행태가 문재인바 언론 상호간에 매체 내용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하여도 권장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편을 짜고 비방하는 양상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언론 스스로의 공적 책임의식 회복과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불신을 벗어나도록 객관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새삼스레 제기된 헌법상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의 위헌성 논쟁을 좀 더 차분하게 이론적 학문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